직인생략

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㉾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6-4487
정책국장 최윤배(6530)/ 정책팀장 박우민(6532)/ 대리 김철욱(6535)/ E-mail: leo0817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713-10188호

시행일자 2017. 2. 27.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-1247호(2017.2.22.)

3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 "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보건복지부령 제482호)"을 '17.2.22.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, 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-

□ 종전에는 유효기한·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또는 수거·폐기 대상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·진열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으나, 앞으로는 판매목적으로 저장·진열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판매한 행위보다 그 처분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,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붙임 :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보건복지부령 제482호)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※ 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